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과

○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11. 2. 15. 제 천 시 장

○ 회 부 일 : 2011. 2. 16.

○ 상 정 일 : 2011. 2. 21.(제1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 (제안설명자 : 건설방재과장 박문종)

가. 제안이유

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도로점용료 징수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○ 본 조례 제1조 중 근거법률인「도로법」 제43조를 「도로법」제41조 제2항으로 하고 제2조 중 「도로법시행령」 제24조제5항을 제28조 제5항으로 수정하며

○ 제3조제2항을 전부 개정하여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(도로부지는 제외한다.)의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. 이 경우 도로점용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(도로부지는 제외한다)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. 로 개정하며

○ 제3조 제3항 중 "1월"을 "매 1월"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의 "산정"을 "기준으로"하고 제6항의 "단위당 점용료"를 "점용료〃로 하고

○ 제3조제9항 중 "점용물품중"을 "별표1 제2호의 점용물 중"으로 하고 "직경"을 "지름〃으로 하며

○ 제10조 중 "도로법 제40조"를 "「도로법」제38조"로 개정하는 것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상학)

○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0. 12. 1.일 근거 법률인 도로법의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법조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

○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1년 1월 19일부터 2011년 2월 7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으며 2011년 2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법적 하자는 없으며

○ 제1조(목적) 중 근거법률인 현행 도로법 제43조는(원상회복)으로 제41조(점용료의 징수)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조례 제10조의 경우도 도로법 제40조(점용공사의 대행) 보다 법 제38조(도로의 점용)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 지며

○ 조례 제2조 중 도로법 시행령 제24조(경미한 유지) 보다는 제28조(점용의 허가신청)제5항의 적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고

○ 그 밖의 개정사항은 조례를 점용료부과에 적용하기 편리한 해석과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표1 제2호의 점용물에 대하여 「직경」을 「지름」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, 조례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에 대한 검토결과 2010.9.17. 개정된「도로법시행령」 [별표2] 점용료 산정기준표(제42조제1항 관련)중 비고 소재지중 "병지"를 적용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대한 위배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.

4. 질의 답변 요지

가. 질의요지

○ 없 음

나. 답변요지

○ 없 음

5. 소 수 의 견

" 없 음 "

6. 토 론 요 지

" 없 음 "

7. 심 사 결 과

" 원 안 가 결 "

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○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 끝.